

책 임 준 공 확 약 서

● 수 신 (채권자 겸 수익권자) : ㈜이지편딩대부, ㈜위편딩대부 귀중

● 사업 (부동산)에 대한 표시

위 치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102-109외 2필지
대지면적(m ²)	437.00
연 면 적(m ²)	1,705.60
용도 / 구조	주상복합시설 1개동(근린생활시설 2실, 주거용 47세대)
허 가 번 호	중랑구 2017-건축디자인과-신축허가-309


1. 본인은 박 [redacted], 양 [redacted] (이하 "시행자") 사이에 2018년 1월 29일 체결한 후 2018년 6월 29일 변경한 공사도급계약(이하 "본 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시공자로서, 당사의 책임으로 공사도급계약상 준공일인 2019년 3월 20일 이내(이하 "책임준공일")에 건축물을 책임준공하여야 함을 인정하며, 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이 이행을 확약하는 "책임준공"이란 준공 기한 이내에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시행자로 하여금 본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주무관청으로부터 취득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3. 본인은 천재지변, 전쟁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의 공사대금 미지급, 조항 또는 본인의 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소정의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시, 기타 이에 준하거나 유사한 절차의 개시, 본 건 사업과 관련한 민원 발생 등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관계법령, 설계서 및 시방서와 안전계획 및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건설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책임준공일까지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4. 본인은 본 책임준공확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이와 관련하여 귀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으며, 별첨 시공권 포기각서와 같이 본 건 사업의 시공권을 포기할 것입니다.
5. 본인은, 본 책임준공확약서가 본 건 공사도급계약 및 귀사, 시행자 및 본인과 사이에 [redacted]년 [redacted]월 [redacted]일 체결된 대출약정서(이후 수정, 변경된 것을 포함 함)와 상충되는 경우, 본 책임준공확약서가 우선 적용되고 우선적 효력을 가짐을 확인합니다.

2018년 8월 7일

위 확약인 (시공자)

성 명 /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건설주식회사
 박 [redacted]
